

◆ 강동힐링요양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입소관련

- 정 원 : 29명
- 자 격 : 장기요양보험공단을 통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1~5등급) 이후 시설에 입소 신청 가능
- 입소절차 : 내방(인정서 지참) → 이용신청(서류제출) → 사정회의 → 서비스 계획 및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 필요서류 :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주민등록등본(어르신 성함으로) ④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성함으로) ⑤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유무 확인) ⑥ 신분증
-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통보서, 치매진단서

3. 요양원 입소비용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1) 이용료(30일 기준)

등급	공단		본인부담금 (20%)	비급여			납부액
	1일 수가	30일 수가		식대	간식	상급병실료	
1등급	90,450원	2,713,500원	542,700원	378,000원	90,000원		1,010,70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503,460원	378,000원	90,000원		971,460원
3등급	79,240원	2,377,200원	475,440원	378,000원	90,000원		943,440원
4등급	79,240원	2,377,200원	475,440원	378,000원	90,000원		943,440원
5등급	79,240원	2,377,200원	475,440원	378,000원	90,000원		943,440원

※ 장기요양 수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비용) 1항(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에 의거

※ 본인부담금의 경우 공단부담금에서 생활 구분에 따라 20% 납부

* 비급여 : 식대-1식 4,200원(1일 3회 : 12,600원) / 간식-1회 1,500원(2회 3,000원) /

상급병실료-101호 : 1박 10,000원(30일 : 300,000원), 204호 : 1박 15,000원(30일 : 450,000원)

* 생활구분-본인부담금 20% + 비급여(식비+간식비)

-감경 : 본인부담금 12%, 8% + 비급여(식대+간식비)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본인부담금만 발생, 비급여는 부담하여야 함.

제 11 장 입 소

제6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요양등급 입소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일반입소자는 요양등급을 받을 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갑"은 "을"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등급 단가	일수	급여총액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식사,간식)	합 계		
					경감 (8%)	경감 (12%)	일반 (20%)		경감 (8%)	경감 (12%)	일반 (20%)
1		81,750	30일	2,452,500	196,200	294,300	490,500	450,000	646,200	744,300	940,500
등급											
2		75,840	30일	2,275,000	182,000	273,000	455,000	450,000	632,000	723,000	905,000
등급											
3~5		71,620	30일	2,148,600	171,890	257,830	429,720	450,000	621,890	707,830	879,720
등급											

비급여산출내역: ※ 식사재료비 : 4,100원× 3회× 30일 = 369,000원

※ 간 식 비:2,700원 x 1일x(30일)=81,000원

※ 이,미용비(퍼머 포함)는 실비 (수급자 요청 시)

※ 상급실 사용료 : 101호 1일8,500원x30일 =255,000원/ 204호 1일9,500원x30일=285,000 (2인실 기준) 추가

※ 개인의료비 및 물품 구입비 (실비수납 항목을 기재함)

4. A.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 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질병, 병세,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라.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마.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락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바.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사. 신원 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아. 신원 인수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B.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 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사망, 입·퇴소, 외출·외박 시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입소 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거나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